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낚시어선 승객,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

『낚시관리 및 육성법』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 안전사고예방,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,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> 2014. 2. 10. 제주특별자치도지사

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

1.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승객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,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, 환경·생태계 보존을 위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요구사항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
2. 낚시어선업 신고를 마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 승선하여야 한다.
3.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모든 낚시인은 선상낚시 또는 무인도서 및 갯바위로 안내 받아 낚시중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.

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.
4.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가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나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다. 낚시어선에서 술을 마시거나 위험물 반입 및 운송 ,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. 인명구조 장비나 그 밖에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바. 영업제한구역이나 영업제한시간을 위반하여 낚시안내를 요구하는 행위사.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유류(油類)·분뇨·미끼 등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아.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자.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5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 등 낚시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즉각 협조하여야 한다.

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

1. 영업구역의 제한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, 해사안전법, 원자력법, 항만법, 개항질서법 등에 따른 제한 및 통제구 역,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시설, 간출암 등에서의 영업을 금지한다.

2. 영업시간의 제한

- 가. 등화, 레이다, 무선설비,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어선설비기준(해양수산부 고시) 및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(해양수산부 고시)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어선은 <u>야간영업을 하여서</u>는 아니 된다.
- 나. 낚시증객의 안전상 해경, 관계 공무원 등의 철수 요구가 있을 경우 낚시어선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다.
- 3. 그 밖에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가.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낚시승객에게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

- 나. 출항 전 선체·기관·통신·구명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. 다. 음주 및 약물복용(환각물질 등)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,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조종
-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라. 주취자·정신질환자·환자·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미만 어린이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 선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마. 무인도에 낚시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, 야영을 금지시켜야 하며,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낚시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바. 잠수어업인 물질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사. 낚시승객들에게 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사용법을 알려주고, 낚시어선을 이용 하는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. 이때 승선자란 낚시 어선업자 또는 선원, 선상낚시인 및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무인도서 및 갯바위 낚시터로 안내받은 낚시인 등 모든 낚시어선 이용자를
- 말한다. 아. 사고발생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, 인명구조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자. 그밖에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위 낚시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또는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(벌칙) 및 제55조(과태료)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대료 처분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8조(영업의 폐쇄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(행정처분기준)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